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이노뎁(주)
○ **대 상 품 목** : VURIX S/W 등 11종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13,766,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09 월 15 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 노 뎁 ㈜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스마트도시협회
○ **대 상 품 목** : 스마트도시안전망(5대연계서비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6,800,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마크애니
○ **대 상 품 목** : CCTV영상반출시스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CCTV영상 AI 마스킹 프로그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1,356,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마 크 애 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새눈
○ **대 상 품 목** : 불법주정차단속 및 문제차량 검색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21,751,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식회사 새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다누시스
○ **대 상 품 목** :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연계SW 및 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2,948,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09월 02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다누시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투비
○ **대 상 품 목** : DELL 서버 R740 등 15종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37,384,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09 월 15 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투 비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쿠도커뮤니케이션㈜
○ **대 상 품 목** :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서버 1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2,315,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09월 10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쿠도커뮤니케이션(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 **대 상 품 목** : 방화벽 4대, VPN 4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0,809,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 큐 아 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아이티센클로잇
○ **대 상 품 목** : CCTV영상 저장장치(스토리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51,464,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8월 28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티센클로잇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렉스젠
○ **대 상 품 목** : 차량번호인식용CCTV 16개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9,717,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렉 스 젠(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디케이앤트
○ **대 상 품 목** : AI영상 분석시스템 SW 및 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4,368,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9월 9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디케이앤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현진아이씨티(주)
○ **대 상 품 목** : 방범 비상벨 시스템 SW 및 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3,060,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현진아이씨티(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리시청(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클루버
○ **대 상 품 목** : 사회적약자서비스(스마트지킴이 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및 관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2,312,000원/VAT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4일

발 주 기 관 명 **구 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식회사 클루버** (인)